

## 2022 경기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강화 사업 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

- ※ 해당 유의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안의 책임은 보조사업자(해당 기관)에 있음
- ※ 사업신청단계에서는 총 지원금액과 간략 예산 내역을 공모신청서 내에 작성하여 제출  
--> 선정 후 지원금액에 따라 세부 예산산출계획을 작성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신청하여야 하며,  
센터 협의 없이 자비로 프로그램 운영 후 지원비로 보전할 수 없음
- 모든 예산은 e나라도움을 통한 집행·관리·정산 필수  
⇒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지출은 전자(세금)계산서, 보조금전용카드로 지출 가능하여야 함  
⇒ 일반공모- e나라도움 예치형(신용카드 사용)
- 예술교육팀 지정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검사 필수  
(운영비-일반수용비 내 회계검사 수수료 편성)
- 회의 운영비는 사업취지와 목적에 맞게 편성 가능하되, 회의록 제출(일시, 장소, 내용, 참여자) ※ 식·음료 사진증빙은 필요 없음
- 사업참여인력 수업 인건비는 **회차당 3시간 편성**(수업 준비 및 마무리 시간 포함)  
※ 외부활동 등으로 회차당 3시간 초과 편성 시 별도 계획서 제출 및 센터 사전 협의 필수(최소 2주 전)
- 기획자, 주강사, 보조강사, 특강강사 혹은 그 가족(직계비존속)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에 지원비 집행 불가  
- 예시1) 주강사 김OO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문구점에서 교육재료 구입 ⇒ 불가  
- 예시2) 특강강사 박OO가 개발한 교육키트를 프로그램에 사용하기 위해 박OO가 대표로 있는 사업체에서 교육 키트 일괄 구입 ⇒ 불가  
- 예시3) 기획자 이OO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참여자 다과 구입 ⇒ 불가
- 초빙(특강)강사 편성 여부는 선택사항이며, 전체 회차 중 10% 내 편성 가능  
- 예시) 총 20회차 운영시 특강강사 2회차까지 편성 가능(3회 이상 편성 불가)
- 초빙(특강)강사비는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%만 추가 적용  
- 예시) 1등급 특강강사 3시간 출강 시 (250,000x2시간)+(250,000\*50%x1시간)=375,000원 ※ 단, 기타소득 8.8% (33,000원) 공제 후 실지금액은 342,000원
- 업무추진비(강사 회의식비, 참여자 다과비)의 합은 **총 예산의 10% 이하** 편성 가능
- 여비는 프로그램 운영과 직접 관계된 출장에 한하여 증빙서류(영수증, 출장보고서)로 지출 가능

## 2022 경기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지원사업 **편성불가 항목**

※ 해당 편성불가 항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안의 책임은 보조사업자(해당 기관)에 있음

인정불가 경비	세부 내역
자산취득성 물품	○ 가구(책상, 의자 등) ○ 전자기기(마이크, 카메라, PC, 프린터 등)
프로그램 운영과 관계없는 단체·기관의 상설운영 경비	○ 상근인력에 지급하는 인건비 ○ 프로그램교육공간이 아닌 운영사무실 임대료, 시설비, 수선비 ※ 단, 지역특성화 기획공모(거점지원)은 센터와 협의 하에 공간 임대료 편성 가능 ○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무관한 사무용품, 공과금, 전화요금 등
시혜성 물품	○ 행사 관련 상품권, 상금, 사례금 지급 금지 예) 문화상품권 등
과도한 식비, 다과비	○ 매회 식사비, 매회 회의비, 단순 인건비를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도록 하며, 회의비의 경우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있는 경비만 편성하고, 소모성 경비는 편성 자제함 ※ 특히, 코로나19 심각단계와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에 의거하여, 해당 기간에는 방역지침에 따라 간식제공 금지, 식음료비 지출과 회의비 지급 자제권고
주류 및 유희성 지출	○ 주류 구입 불가하고 유희성 업소에 집행 불가함 ○ 회의식비가 아닌 강사 회식성(심야시간) 지출 불가 ※ 회의식비 지출 시, 일시,장소, 정확한 참여인원, 회의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작성 및 제출
경기센터와 협의되지 않은 인건비 지급	○ 계획서내에 사전 승인 받지 않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(강사비, 기획자 인건비 등) 지급 불가 ○ 수혜자 및 학부모에게 사례금 지급 불가(원고비 등) ○ 인건비 중복·교차 지급 불가 예) 주강사비를 받는 주강사에게 보조강사비 지급 불가, 기획자에게 주강사비 지급 불가
참여 인력 및 단체 명의의 사업체에 보조금 집행	○ 사업 참여 인력 및 단체와 관련된 사업체(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사 포함)에 모든 사업비 집행불가 (추후 발견 될 경우 전액 환수 조치)
기타 사항	○ 보조금 통장 이자 반납 수수료 ○ e-나라도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○ 교육 기자재 중 교육시간 외 용도가 더 큰 기자재 임차 시 사전에 센터와 협의 필수

## 2022 경기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지원사업 예산 편성가능 여부

목	세	세세목	산 출 기 초													
운영비 (210)	일반 수용비 (01)	사업참여인력 인건비	<p>문화예술 교육사 인건비</p> <p>○ 문화예술교육사 기본급은 22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(운영기간 6~10개월) 운영기관 연봉규정에 따른 편성 시 협의 필요 - 주 40시간 근로 기준, 4대 보험금 중 개인부담금 기본급에 포함, 기관 부담금은 별도 책정 -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하는 연장·야간·휴일수당 책정 - 감사비와 중복지급 불가 ※공개채용원칙, 교육프로그램 기획개발에서 운영 전반에 선발된 문화예술교육사 인력이 근무함. 해당 기간 동안 시설 별 근로계약기준 준수하여 인건비, 직원복지 등 제공</p>													
			<p>강사/ 초빙강사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cccccc;"> <th style="width: 10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90%;">내 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강사비</b></td> <td> <p>○ 주강사 : 시간당 50,000원 / 보조강사 : 시간당 30,000원</p> <p>- 감사비는 교육 회차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※ 캠프, 현장학습의 경우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예외 책정 가능</p> <p>- 감사비와 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</p> <p>- 지급내역서(인적사항 : 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연락처), 교육/강연 일자·시간, 금액 등 포함) 작성 및 계좌입금 원칙</p>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초빙 강사료 (연수 등)</b></td> <td> <p>○ 특강 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 - 예시 : 총 3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, 최대 3회까지 특강 강사 활용 가능</p> <p>○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%만 추가 적용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: 10px 0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ffffcc;"> <th style="width: 2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등급</th> <th style="width: 60%;">지급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강사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등급*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50,000/시간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등급*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50,000/시간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등급*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,000/시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1등급 : 대학총·학장, 주요 기관장급 /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: 대학부교수급이상,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,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(급) 및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: 대학 전임강사이상,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/ 전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, 그 밖의 기타 경력자</p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내 용	<b>강사비</b>	<p>○ 주강사 : 시간당 50,000원 / 보조강사 : 시간당 30,000원</p> <p>- 감사비는 교육 회차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※ 캠프, 현장학습의 경우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예외 책정 가능</p> <p>- 감사비와 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</p> <p>- 지급내역서(인적사항 : 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연락처), 교육/강연 일자·시간, 금액 등 포함) 작성 및 계좌입금 원칙</p>	<b>초빙 강사료 (연수 등)</b>	<p>○ 특강 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 - 예시 : 총 3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, 최대 3회까지 특강 강사 활용 가능</p> <p>○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%만 추가 적용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: 10px 0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ffffcc;"> <th style="width: 2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등급</th> <th style="width: 60%;">지급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강사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등급*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50,000/시간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등급*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50,000/시간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등급*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,000/시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1등급 : 대학총·학장, 주요 기관장급 /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: 대학부교수급이상,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,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(급) 및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: 대학 전임강사이상,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/ 전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, 그 밖의 기타 경력자</p>	구 분	등급	지급금액	강사료	1등급*	250,000/시간	2등급*
구분	내 용															
<b>강사비</b>	<p>○ 주강사 : 시간당 50,000원 / 보조강사 : 시간당 30,000원</p> <p>- 감사비는 교육 회차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※ 캠프, 현장학습의 경우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예외 책정 가능</p> <p>- 감사비와 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</p> <p>- 지급내역서(인적사항 : 성명, 주민번호, 주소, 연락처), 교육/강연 일자·시간, 금액 등 포함) 작성 및 계좌입금 원칙</p>															
<b>초빙 강사료 (연수 등)</b>	<p>○ 특강 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 - 예시 : 총 3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, 최대 3회까지 특강 강사 활용 가능</p> <p>○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%만 추가 적용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: 10px 0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ffffcc;"> <th style="width: 2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등급</th> <th style="width: 60%;">지급금액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강사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등급*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50,000/시간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등급*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50,000/시간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등급*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,000/시간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1등급 : 대학총·학장, 주요 기관장급 /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: 대학부교수급이상,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,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(급) 및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: 대학 전임강사이상,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/ 전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, 그 밖의 기타 경력자</p>	구 분	등급	지급금액	강사료	1등급*	250,000/시간	2등급*	150,000/시간	3등급*	100,000/시간					
구 분	등급	지급금액														
강사료	1등급*	250,000/시간														
	2등급*	150,000/시간														
	3등급*	100,000/시간														

목	세	세세목	산 출 기 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수업 준비비	<p>○ 교육 프로그램 준비를 위한 참여인력 비용</p> <p>○ 주강사·보조강사 : 회당 70,000원</p> <p>- 전체 교육회차의 총 30% 이내에서 책정 가능</p> <p>※ 교육 프로그램 준비 :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기획 회의, 교보재 제작 등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세미나/포럼 등 행사 진행 전문가사례비	<p>○ 각종행사 진행 사례비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: 10px 0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cccccc;"> <th style="width: 20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지급기준</th> <th style="width: 40%;">단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주제발표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A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500,000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B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00,000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C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00,000원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사회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A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00,000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B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0,000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C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,000원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지정토론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A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300,000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B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0,000원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C급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0,00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등급 적용기준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margin: 10px 0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cccccc;"> <th style="width: 20%;">등급</th> <th style="width: 80%;">해당자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A급</b>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학원 및 대학(교) 부교수 이상</li> <li>• 부이사관급 이상 공무원</li> <li>• 언론기관·전문연구기관 임원 및 업무총괄간부</li> <li>•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여 15년 이상의 활동경력과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이룬 전문가</li> <li>• 변호사, 변리사, 의사,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자격증 소지자로서 10년 이상의 활동 경력자</li> <li>•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인사</li> </ul>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B급</b>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학원 및 대학(교) 전임강사 이상</li> <li>•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</li> <li>• 언론기관·전문연구기관의 중견 간부</li> <li>•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여 10년 이상의 활동경력과 전문 지식을 가진 자</li> <li>•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인사</li> </ul>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C급</b>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당 분야의 학식과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'A급', 'B급'에</li> </ul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지급기준	단가	주제발표자	A급	500,000원	B급	400,000원	C급	300,000원	사회자	A급	300,000원	B급	200,000원	C급	100,000원	지정토론자	A급	300,000원	B급	200,000원	C급	100,000원	등급	해당자	<b>A급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학원 및 대학(교) 부교수 이상</li> <li>• 부이사관급 이상 공무원</li> <li>• 언론기관·전문연구기관 임원 및 업무총괄간부</li> <li>•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여 15년 이상의 활동경력과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이룬 전문가</li> <li>• 변호사, 변리사, 의사,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자격증 소지자로서 10년 이상의 활동 경력자</li> <li>•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인사</li> </ul>	<b>B급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학원 및 대학(교) 전임강사 이상</li> <li>•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</li> <li>• 언론기관·전문연구기관의 중견 간부</li> <li>•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여 10년 이상의 활동경력과 전문 지식을 가진 자</li> <li>•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인사</li> </ul>	<b>C급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당 분야의 학식과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'A급', 'B급'에</li> </ul>
구분	지급기준	단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제발표자	A급	50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B급	40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C급	30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사회자	A급	30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B급	20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C급	10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정토론자	A급	30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B급	20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C급	100,000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등급	해당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A급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학원 및 대학(교) 부교수 이상</li> <li>• 부이사관급 이상 공무원</li> <li>• 언론기관·전문연구기관 임원 및 업무총괄간부</li> <li>•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여 15년 이상의 활동경력과 뛰어난 예술적 성취를 이룬 전문가</li> <li>• 변호사, 변리사, 의사,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자격증 소지자로서 10년 이상의 활동 경력자</li> <li>•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인사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B급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학원 및 대학(교) 전임강사 이상</li> <li>•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</li> <li>• 언론기관·전문연구기관의 중견 간부</li> <li>•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여 10년 이상의 활동경력과 전문 지식을 가진 자</li> <li>•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인사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b>C급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해당 분야의 학식과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'A급', 'B급'에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목	세	세세목	산출기초													
			해당되지 않는 기타 인사													
		회의수당 및 자문료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등급</th> <th>지급금액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자문회의의 참석수당</td> <td>심층</td> <td>200,000원</td> <td>회당 (2시간 기준)</td> </tr> <tr> <td>일반</td> <td>100,000원</td> <td rowspan="2">※ 2시간 초과 시 50% 적용 증액 1일 최대 4시간까지 적용가능</td> </tr> <tr> <td>좌담회</td> <td>100,000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○ 회의수당 및 자문료 지급 관련 - 회의 참석자 중 내부 참여인력 사례비 지급 불가 -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의 시 사례비 지급 가능</p>	구분	등급	지급금액	비고	자문회의의 참석수당	심층	200,000원	회당 (2시간 기준)	일반	100,000원	※ 2시간 초과 시 50% 적용 증액 1일 최대 4시간까지 적용가능	좌담회	100,000원
구분	등급	지급금액	비고													
자문회의의 참석수당	심층	200,000원	회당 (2시간 기준)													
	일반	100,000원	※ 2시간 초과 시 50% 적용 증액 1일 최대 4시간까지 적용가능													
	좌담회	100,000원														
		강사 교통비	<p>○ 강사의 교통비 지급 여부는 기관의 선택 ○ 강사 교통비 산출기준은 선정기관의 기준에 준함 ※ 기준이 없을 경우 경기문화재단 기준에 따름</p> <p>※ 단, 강사 거주지와 교육장소 간의 왕복거리가 왕복 30km 미만 지역의 경우 지급 불가하며, 30km 이상이라도 같은 사.군.구 내에서는 지급할 수 없음 ⇒ <b>가급적 지역에서 활동하는 강사를 활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사용 도모할 것</b> ※ 서울-제주 등 철도·항공비 등 실제 지급은 영수증으로 증빙하여 지급가능</p>													

목	세	세세목	산출기초
		교육재료비	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교육 재료비
		홍보비/인쇄비	리플렛, 포스터, 현수막 등
		기타운영비	프로그램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기타 비용
		회계검사수수료	(필수) 회계검사 수수료 336,000원 x 1식 ※부가가치세 10%별도
	공공요금 및 제세(02)	공공요금 및 제세	보험료, 우편료, 택배발송료, 쿼서비스 이용료 등
여비 (220)	임차료 (07)	대관/임차	교육 공간 대관 / 장비, 소품 임차 등
	일반 용역료 (14)	용역료	외부 업체 용역료
	국내 여비 (01)	여비 기준	○ 출장경비 및 교통비 지급 기준 ⇒ 선정기관의 기준에 준함 ※기준이 없을 경우 경기문화재단 기준에 따름
	업무 추진비 (240)	강사 회의식비	강사 회의에 소요되는 다과비, 식대 등
		참여자 다과비	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다과비
인건비 (110)	일용 임금 (04)	보조 인력	○ 일용직(아르바이트) - 1일 행사 보조, 정산 보조 등 ⇒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,160원 적용